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2. 6 선고 2024가단142621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5.

판결 선고2024. 12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5. 11.부터 2024. 10. 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정민

별지